인천지방법원 2023. 2. 22 선고 2021가단2103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성훈

변 론 종 결 2023. 1. 18.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20. 11. 18.1) 체결된 매매계약을 36,599,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599,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20. 1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76,90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6,9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물품대금 76,90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17. 6. 30. 'C는 원고에게 76,9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2017. 4.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가단11222 판결).

나. 위 C는 2020. 11. 18.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남편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로 인한 소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선박은 어선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의무가 있고, 다만 총 톤수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해당하여 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선박등기의 대상은 아니다. 한편, 소형어선의 경우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긴다(성립요건주의, 이 경우 대항요건주의를 규정한 상법 제743조는 적용이 배제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소외 C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70,000,000여원의 대출금 채무 등이 있었고, 적극재산은 이 사건 선박 및 전남 영광군 E 소재 토지 및 건물이 있었다. 한편,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F), 경매법원이 신청인인 원고에게 매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선박의 시가 감정액(어업허가권을 포함한 감정액이다. 이하 같다)은 114,779,5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2. 8.을 기준으로 한 그 시가 감정액은 108,599,880원이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물권은, 각 채권자를 D조합, 각 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55,900,000원의 근저당권과 2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2020. 11. 30.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72,000,000원이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1. 1. 11. 이 사건 선박에 채권자 영광군청, 채무자 피고, 설정금액 24,150,000원으로 된 저당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을 들어 피고, 위 C 및 소외 G(피고의 형이자 위 C의 시숙)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G는 2022. 10. 27.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 (제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위 G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2. 7. 그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G는 2023. 2. 13.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439호, 같은 법원 2022노2556호).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D조합 법성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C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3) 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선박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하는 행위로써 위 C의 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써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인정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취소를 명하는 범위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살펴본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제1의 마. 바.항 기재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물반환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즉, 원고의 위 C에 대한 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선박의 공동담보가액(즉, 이 사건 선박의 시가 상당액 중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할 것이다. 따라서 그중 그 액수가 적음이 계산상 명백한 이 사건 선박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동담보가액, 즉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선박의 시가 감정액인 위 108,599,880원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인 위 7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36,599,880원(=108,599,880원- 72,000,000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 36,599,8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36,599,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로서 이 사건 판결확정일을, 법정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을 들고 있으나,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본문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에서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별지

1)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2)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피고인(=G)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 및 피고와 논의하여 이 사건 선박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그 공부상소유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20. 7. 29. C가 피고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20. 11. 18. C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대금 1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영광군에 제출하여 이 사건 선박의 공부상

명의를 C에서 피고로 이전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C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은 무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